

# IFRS Brief

## IFRS Newsletter



### IASB 주요 프로젝트 진행 현황

IASB가 2019년 4월말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프로젝트의 진행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현재상황	진행계획	
		6개월 내	6개월 이후
<b>공개초안</b>			
요율규제활동	분석 중	토론서 또는 공개초안 발행	
공시개선 - 회계원칙	분석 중	토론서 또는 공개초안 발행	
보험계약 개정	분석 중	공개초안 발행	
<b>토론서</b>			
동일지배하의 사업결합	분석 중		토론서 발행
동적 위험관리	분석 중	주요 모형 발표	
영업권과 손상	분석 중	토론서 발행	
자본의 특성을 가진 금융상품	분석 중	프로젝트의 방향 결정	
할인율	분석 중	연구 결과 요약 발표	

위의 주요 프로젝트 중 IASB의 3, 4월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Contents

IFRS 뉴스레터 2019년 5 · 6월호	
IASB 주요 프로젝트 진행 현황	1
I. 보험계약	
Global 동향	6
I. 2019년 3월, 4월 IASB meeting 기타 논의사항	
II. 2019년 3월 IFRIC meeting 주요내용 요약	
IFRS 실무적용 해설	15
복합금융상품에 대한 지분법 적용	

## I. 보험계약

IASB는 IFRS 17 보험계약과 관련한 다음의 개정사항에 대해 논의 하였다.

### (1) 보험을 제공하는 신용 카드

IASB는 보험 보장(Insurance coverage)을 제공하는 신용카드계약의 적용 범위에 대해 논의하였다. 보험 보장을 제공하는 신용카드의 예시로 일반적인 신용카드에 다음과 같은 보험 보장이 추가된 계약을 들 수 있다.

- a. 법규에 따라 신용카드 발행사는 고객이 해당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구매한 상품에 대한 보험 보장을 제공해야 함. 이 보험 보장에 따르면, 상품 공급자가 구매 계약을 위반하여 고객이 상품 공급자에게 청구하는 금액을 신용카드 발행사가 고객에게 환불해 주어야 하며, 신용카드 발행사는 그로 인한 손해를 상품 공급자에게 배상받을 권리가 생김
- b. 법규에 따르면 고객은 신용카드 발행사 또는 상품 공급자 중 청구할 대상을 선택할 수 있고, 카드 사용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음(예 : 구매대금 중 일부만 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경우 에도 구매대금 전체를 청구 가능)

IASB는 신용카드 발행사가 보험보장을 제공하는 신용카드계약에 대해 고객과의 계약에 대한 가격 설정 시 개별 고객에 대한 보험 위험 평가를 반영하지 않는 계약은 IFRS 17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잠정 결정하였다.

### (2) 경과 규정 - 위험 경감 선택권(Risk mitigation option)<sup>1</sup>

IASB는 다음과 같이 개정하기로 잠정 결정하였다.

- a. 위험 경감 선택권을 전환 시점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개정 전 요구사항은 최초 적용일부터 전진 적용하는 것임). 단, 전환 시점보다 늦지 않은 시점에 기업의 위험 경감 관계에 위험 경감 선택권을 적용하는 것으로 지정하여야 함
- b. IFRS 17로 전환 시, 소급법 적용이 실무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 집합에 공정가치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단,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i. 보험계약집합에 위험 경감 선택권을 전환 시점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하기로 선택함
  - ii. 전환 시점 전부터 보험계약 집합에서 발생하는 금융 위험 경감을 위해 파생상품과 재보험계약을 사용함

### (3) 경과 규정 - 유의적 보험 위험을 이전하는 대출 계약<sup>2,3</sup>

IASB는 다음과 같이 잠정 결정하였다.

- a. 기업이 유의적인 보험 위험을 이전하는 대출 포트폴리오에 IFRS 17의 요구사항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IFRS 17의 경과 규정을 그대로 적용함

1 직접참가특성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기업의 몫에 해당하는 기초항목의 공정가치에 대한 금융위험 효과와 특정 이행현금흐름 변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험계약마진의 변동으로 인식하지 않고 손익으로 인식할 것을 선택하는 것을 말함(IFRS 17.B115 참고).

- b.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유의적인 보험 위험을 이전하는 대출에 IFRS 9 '금융상품'의 경과 규정을 그대로 적용함
  - i. 기업이 그러한 대출의 포트폴리오에 IFRS 9의 규정을 적용하기로 선택함
  - ii. 기업이 IFRS 17과 IFRS 9을 동시에 최초 적용함

IASB는 또한 IFRS 17을 최초로 적용하기 전에 IFRS 9을 적용한 기업이 유의적인 보험 위험을 이전하는 대출 포트폴리오에 IFRS 9의 경과규정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에, IFRS 17을 최초 적용시 적용할 IFRS 9의 경과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기로 잠정 결정하였다.

- a. 제안된 개정 내용을 적용할 때, 관련된 IFRS 9의 경과 규정을 적용해야 함
- b. 제안된 개정 내용을 적용함에 따라 새로운 회계 불일치가 생긴다면 제안된 개정 내용의 최초 적용일에 금융 부채를 FVPL로 측정하도록 새롭게 지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과거에 존재하였던 회계불일치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면 제안된 개정 내용의 최초 적용일에 금융부채의 FVPL 측정 지정을 취소하도록 요구함
- c. 제안된 개정 내용을 적용하여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도록 요구하지는 않으나, 특정 상황에서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것을 허용함
- d. IAS 8 문단 28(6)4에서 요구하는 양적 정보의 표시를 면제함
- e. 타기준서에서 요구하는 공시 요구사항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를 공시할 것을 요구함.
  - i. 해당 대출의 과거 분류(측정 범주 포함) 내역과 제안된 개정 내용 적용 직전의 장부금액
  - ii. 제안된 개정 내용 적용 후 IFRS 9에 따른 새로운 측정 범주와 장부금액
  - iii. 과거에 FVPL로 지정하였으나 제안된 개정 내용에 따라 더 이상 FVPL로 지정되지 않는 금융 부채의 개정 내용 최초 적용일 현재 장부금액
  - iv. 금융부채의 FVPL 측정 지정 또는 지정 취소 사유

2 예시 : 대출이자율에 생명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차입자가 사망하는 경우 대출금 잔액의 상황이 면제되는 특성을 가진 생명보험보장을 포함하는 모기지론

3 IASB는 2019년 2월에, 유의적인 보험 위험을 이전하는 대출 계약의 회계처리를 위해 IFRS 9 또는 IFRS 17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IFRS 9과 IFRS 17의 적용 범위를 개정하기로 잠정 결정하였다.

4 IAS 8 문단28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이 당기 또는 과거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당기 또는 과거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영향의 조정금액을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 또는 미래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6)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당기 및 비교 표시된 각 과거기간의 다음 항목

(가) 회계정책 변경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의 각 항목별 조정금액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 '주당이익'이 적용되는 경우,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의 조정금액

#### (4) 공시 요구사항의 개정

IASB는 다음과 같은 제안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IFRS 17의 공시 요구사항을 개정하기로 잠정 결정하였다.

제안된 개정사항	관련 공시 요구사항 개정 내용
a. 보험 보장과 투자 관련 서비스(또는 투자 수익 서비스)를 모두 고려하여 결정된 보장 단위를 기초로 하여 보험계약마진을 손익으로 인식 <sup>5</sup>	<p>다음 공시사항을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 보고기간 말 현재 손익으로 인식될 것으로 예상되는 잔여 보험계약마진의 양적 공시 (적절한 시기별로 구분)</li> <li>ii. 보험 보장과 투자관련 서비스(또는 투자 수익 서비스)가 제공하는 효익을 가중평균 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공시 (문단 117의 공시 요구사항의 일부분으로 공시)</li> </ul>
b. 인식된 보험 계약 집합의 측정에 아직 포함되지 않은 보험 취득 현금흐름 관련 개정사항 <sup>6</sup>	<p>다음 공시사항을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 이러한 현금흐름에서 발생하는 자산의 보고기간 초에서 보고기간 말까지의 조정 내역과 변동 내역(손상과 환입 인식 포함) 공시. 조정 내역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통합 수준은 관련 보험 계약에 IFRS 17 문단 98을 적용할 때 사용하는 통합 수준과 일관되어야 함.</li> <li>ii. 이러한 보험 취득 현금흐름이 관련 보험 계약집합의 측정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 되는 시기에 대한 양적 정보를 공시(적절한 시기별로 구분)</li> </ul>

<sup>5</sup> IASB는 2019년 1월에, 일반모형에서 보험계약마진을 손익으로 인식할 때 보험 보장과 투자 수익 서비스를 모두 고려하여 산정된 보장 단위를 기초로 하도록 IFRS 17을 개정하기로 잠정 결정하였다.

<sup>6</sup> IASB는 2019년 1월에 다음과 같이 IFRS 17을 개정할 것을 잠정 결정하였다.

- a. 신규 발행 계약에 직접적으로 배분되는 보험 취득 현금 흐름의 일부분을 예상되는 계약 갱신에 배분하고, 그 갱신된 계약이 인식될 때까지 해당 보험 취득 현금 흐름을 IFRS 17 문단 27을 적용하여 자산으로 인식함
- b. 위에서 인식된 자산은 해당 보험 계약이 인식되기 전 매 보고기간마다 회수가가능성을 평가하고, 장부 금액의 회수가가능성이 없는 금액은 손실을 손익으로 인식하며, 손상 조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개선된 경우 손상 환입을 손익으로 인식함

## (5) 연차 개정 사항

IASB는 연차 개정의 범위에 속하는 기타 제안된 개정사항에 대해 논의하였고, 다음과 같이 개정하기로 잠정 결정하였다.

- 문단 B96(3) :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에 대한 변동내역은 보험계약마진 조정 내역에서 제외함을 명확히 함
- 문단 B96(4)와 B97(1)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 조정 변동내역을 세분화하도록 개정함
- 문단 B118 : 위험 경감 선택권 적용을 위한 적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만 위험 경감 선택권의 사용을 중지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투자요소의 정의 : 투자요소가 '모든 상황'에서 기업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상환'해야 하는 금액임을 명확히 함.
- 문단 11(2) : 주계약인 보험계약에서 분리한 투자요소가 재량적 참가 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에 해당 하는 경우 IFRS 17을 적용함을 명확히 함
- 문단 48(1)과 50(2) : 비금융 위험 관련 위험 조정의 변동내역을 손실 요소에서 조정하도록 개정함
- 문단 B128 : 기초 항목의 변동에서 야기되는 보험계약집합의 측정 변동은 IFRS 17의 목적 상 투자의 변동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화폐의 시간가치나 금융 위험 관련 가정의 변동으로 간주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

IFRS 17 개정사항에 대한 공개초안은 2019년 6월 말에 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Global 동향

## I. 2019년 3월과 4월 IASB meeting 기타 논의사항



IASB의 주요 프로젝트 외에 2019년 3월과 4월의 IASB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IAS 1] 재무제표 표시 - 부채의 유동 / 비유동 분류

IASB는 3월 회의에서 2015년 2월에 발표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IAS 1 '재무제표 표시'의 공개초안에 대해 제출된 의견에 대해 논의 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한 공개초안의 변경된 문단은 다음과 같다.

현행 IAS 1	공개초안 IAS 1
69(4)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문단 73참조). 계약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지분상품의 발행으로 결제할 수 있는 부채의 조건은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 부채로 분류한다.	69(4)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고기간 말에 가지고 있지 않다(문단 72R참조). 계약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지분상품의 <b>발행</b> 으로 결제할 수 있는 부채의 조건은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유동항목과 비유동항목을 분류함에 있어, 부채의 결제는 현금, 지분상품, 그 밖의 자산 또는 그 밖의 용역을 거래상대방에게 <b>이전</b> 하여 부채를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공개초안에서는 기존 IAS 1 문단 69(4)에서는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언제”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서 “보고기간말에” 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였다. 또한 “유동항목과 비유동항목을 분류함에 있어, 부채의 결제는 현금, 지분상품,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여 부채를 소멸시키는 것이다”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부채의 결제”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였다.

IASB는 이번 회의에서는 공개초안에 대해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여 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특성을 가진 부채의 유동성 분류에 대해 논의 하였다.

IASB는 기존 IAS 1 문단 69(4)에서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분상품을 발행하여 부채를 결제하는 것”은 전환사채와 이와 유사한 금융상품 보유자의 전환권(IAS 32의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전환권)에 적용하는 기준이라고 언급하고, 공개초안에 추가된 부채의 결제 방법인 “지분상품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여 부채를 소멸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지분상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확히 기술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하였다.

✓ IAS 32에 따라 자본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지분상품을 이전할 의무를 부채요소의 유동성 분류에 고려함.

✓ 현행 IAS 1과 공개초안의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기지분상품”임을 명확히 함

또한 기존 문단 69(4)의 “지분상품의 발행으로”와 공개초안의 “지분상품을 이전하여”(상기 표에 붉은색 글씨)에서 발행과 이전이 다른 의미인지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용어를 일치시키기로 잠정 결정하였다.

✓ 용어의 일치 - 기존 문단 69(4)에서 지분상품의 “발행”을 “이전”이라는 표현으로 일치시킴. “이전”이라는 용어는 새로운 지분상품을 발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기업의 자기지분상품을 이전하는 의미로 적용할 수 있음

## II. 2019년 3월 IFRIC meeting 주요내용 요약

2019년 3월의 IFRS 해석위원회에서 논의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IFRS IC Tentative Agenda decisions

2019년 3월 해석위원회에서 결정한 Tentative agenda decision은 다음과 같다.

#### (1) 가상화폐의 보유 회계처리

해석위원회는 가상자산의 회계처리에 대해 논의를 하였으며, 해당 논의의 목적상 가상자산(가상화폐)는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 ✓ 가상화폐는 분산원장에 기록되고 증권을 암호화하는데 사용되는 디지털화되거나 가상화된 화폐임
- ✓ 가상화폐는 관할 당국이나 다른 거래상대방에 의해서 발행되지 않음
- ✓ 가상화폐의 보유가 보유자와 다른 거래 상대방 간의 계약을 발생시키지 않음

#### 가상화폐의 성격

IAS 38.8에서는 무형자산을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할 수 있는 비화폐성자산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IAS 38.12에서는 자산이 분리가능하거나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경우 식별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기업에서 분리하거나 분할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또는 관련된 계약, 식별 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와 함께 매각, 이전, 라이선스, 임대, 교환할 수 있다면, 해당 자산은 분리가능하다. 한편, IAS 21.16에서는 화폐성항목의 본질적 특징은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할 수 있는 화폐단위의 수량으로 받을 권리나 지급할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해석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가상화폐의 보유는 IAS 38의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 ✓ 보유자와 개별적으로 분리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매각, 이전할 수 있음
- ✓ 보유자가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할 수 있는 화폐단위의 수량으로 받을 권리가 없음

### 가상화폐의 보유에는 어떤 IFRS 기준서가 적용되어야 하는가?

해석위원회는 가상화폐를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다면, IAS 2 '재고자산'을 적용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다음과 같은 논의를 통해 해석위원회는 가상화폐의 보유에 IAS 2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IAS 38을 적용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 ① 무형자산

무형자산 기준서인 IAS 38이 금융자산을 적용범위에서 배제하고 있으므로, 해석위원회는 가상화폐가 무형자산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지 판단하기 위해 가상화폐의 보유가 IAS 32에 따른 금융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여부와 다른 IFRS 기준서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 보았다.

#### ②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현금 또는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이므로, 금융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론 내렸다.

#### ③ 현금

해석위원회는 IAS 32.AG3에 따른 현금의 정의가 현금이 교환의 수단이고 재무제표에 모든 거래를 인식하고 측정하는 기준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가치를 측정하는 화폐성항목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일부 가상화폐는 특정 재화나 용역의 교환에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해석위원회는 가상화폐는 교환의 수단으로 사용되지도 않고, 용역이나 재화의 가치를 측정하는 화폐성항목에도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가상화폐는 현재 화폐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상화폐의 보유는 현금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 ④ 재고자산

IAS 2는 무형의 재고자산에 적용되며, 해석위원회는 기업이 가상화폐를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경우, 가상화폐의 보유는 기업 입장에서 재고자산에 해당할 것이고, IAS 2가 적용된다.



해석위원회는 기업이 가상화폐의 중개인일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기업은 IAS 2.3(2)7의 요구사항을 적용해야 하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IAS 2.5에 따르면, 중개기업은 타인을 위하여 또는 자기의 계산으로 일반상품을 매입하거나 매도한다. IAS 2.3(2)에 해당하는 재고자산은 주로 단기간 내에 매도하여 가격변동이익이나 중개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한다.

### 공시사항

기업은 가상화폐의 보유에 적용되는 IFRS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을 적용한다. 따라서, 재고자산 인지, 무형자산인지를 판단하여 해당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을 적용하고, 기업이 가상화폐의 보유를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면, IFRS 13 '공정가치 측정'의 공시요구사항을 적용한다.

또한 해석위원회는 IAS 1.122에 따라 가상화폐의 보유에 대한 회계처리가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에 가장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 경영진이 내린 판단에 해당한다면 해당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IAS 10.21에 따라 사건의 성격과 사건의 재무적 영향에 대한 추정치를 포함한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의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면, 보고기간 후 발생한 가상화폐의 공정가치 변동이 공시하지 않는다면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

### (2) [IFRS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계약이행원가

해석위원회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는 계약에서, 이미 이행한 과거 수행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한 원가를 자산화할 수 있는지 논의하였다. IFRS 15 문단 98(c)8에 따라 과거 수행업무와 관련된 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시된 현황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부분적으로 이행한 수행업무 즉, 과거 수행업무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미래의 수행무무를 이행(또는 계속 이행)할 때 사용할 기업의 자원을 창출하거나 가치를 높이는 원가가 아니라 자산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석위원회는 IFRS 15의 원칙과 요구사항이 질의에서 제시된 사실관계에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원가를 인식하는 방법에 대하여 적절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기준서 제정 안건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 (3) [IFRS 16] 리스 - 지하권(subsurface rights) 등의 회계처리

해석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지하권 계약에 IFRS 16 '리스'를 적용해야 하는지, IAS 38 '무형자산'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기준서를 적용해야 하는지를 논의하였다.

✓ 고객(송유관 회사)은 일정대가를 지급하고 토지 지하에 20년간 송유관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는 계약을 토지 소유주와 체결함

7 순공정가치(공정가치에서 매각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로 측정된 일반상품 중개기업의 재고자산. 이 경우 순공정가치의 변동분은 변동이 발생한 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한다.

8 다음 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3) 이미 이행한 (또는 부분적으로 이미 이행한) 계약상 수행업무와 관련된 원가(과거의 수행 정도와 관련된 원가)

- ✓ 계약 상 소유권이 설치되는 정확한 위치와 공간(방향, 폭 및 깊이)이 구체적으로 명시됨
- ✓ 계약기간 동안 토지 소유주는 소유권이 설치되는 토지 표면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만, 소유권이 설치되는 지하공간에 접근하거나 사용방법을 변경할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못함
- ✓ 고객은 소유권에 대한 조사, 수리 및 유지보수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필요한 경우 파손된 소유권을 대체할 수 있음)

### 리스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IFRS 16 문단 9에서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 기간 이전하게 한다면 그 계약은 리스이거나 리스를 포함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문단 B9에서 리스의 정의를 만족하려면 고객은 다음의 권리를 모두 가져야 한다고 되어 있다.

- ✓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
- ✓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을 지시할 권리

#### ① 지하공간이 식별되는 자산인지 여부

해석위원회는 계약에서 소유권의 방향, 폭 및 깊이를 명시하고 있어서, 토지 지표면 명시된 공간이 물리적으로 구분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하공간도 명시되어 있으므로, 지하공간이 토지의 다른 부분과 물리적으로 구분된다고 보았고, 그 공간이 '지하'라는 사실은 식별되는 자산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토지 소유주에게 사용기간 동안 지하공간을 대체할 권리가 없으므로, 명시된 지하공간은 식별되는 자산이라고 결론 내렸다.

#### ② 고객이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

해석위원회는 질의를 받은 계약 상 고객이 20년의 사용기간 내내 명시된 지하공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 ③ 고객이 사용을 지시할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

해석위원회는 계약 상 명시된 지하공간을 사용하는 방법 및 목적에 관련되는 결정(즉, 석유가 수송되는 소유권이 위치할 공간이 정해짐)은 미리 내려졌으며, 고객은 소유권에 대한 조사, 수리 및 유지보수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통해 명시된 지하공간을 운용할 권리를 가지고, 소유주가 그 운용지시를 바꿀 권리가 없으므로 명시된 지하공간의 사용을 지시할 권리를 가진다고 보았다.

상기 분석에 따라 해석위원회는 IFRS 16에서 정의하고 있는 리스가 질의한 계약에 포함되어 있고, 고객은 해당 리스에 대해 IFRS 16을 적용하여 회계 처리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해석위원회는 IFRS 기준서가 질의를 받은 계약의 회계처리를 위한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 이슈를 기준서 제정 안건에 포함하지 않기로 잠정적으로 결론 내렸다.

#### (4) [IAS 19] 종업원 급여 - 기여금에 대한 잠재적 할인이 제도의 분류에 미치는 영향

해석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회사의 퇴직급여제도가 확정기여제도인지 확정급여제도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 하였다.

- ✓ 회사는 제3자가 관리하는 제도에 매년 고정 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함. 해당 기금에서 당기와 과거 기간에 제공된 종업원 근무용역과 관련된 모든 종업원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정도로 자산을 충분히 보유하지 못하더라도 회사는 기여금을 추가로 납부할 의무가 없음
- ✓ 다만 회사는 미리 정해놓은 특정 제도부채 대비 제도자산의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납부해야 할 기여금을 할인 받을 수 있음
- ✓ 이에 따라 회사는 잠재적인 할인으로 인해 보험수리적가정과 제도자산의 투자수익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IAS 19 문단 8에서 확정기여제도는 기업이 별개의 실체에 고정기여금을 납부하고, 기여금을 납부할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더는 없는 퇴직급여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상기 사례의 이슈는 잠재적인 기여금 할인의 존재로 인해 회사의 기여금이 “고정 기여금”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것인지 즉, 회사가 기여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없음에도 회사의 퇴직급여제도가 확정급여제도인지에 대한 이슈이다.

IAS 19에 따르면 확정기여제도는 기업의 법적 의무나 의제의무는 기업이 기금에 출연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 한정되고, 보험수리적위험(급여가 기업에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들게 하거나, 종업원에게 예상 보다 적을 위험)과 투자위험(투자한 자산이 예상급여액을 지급하는데 충분하지 못할 위험)을 종업원이 모두 부담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IAS 19 BC29<sup>9</sup>에서는 확정기여제도의 정의는 기업이 부담하는 원가가 증가할 수 있는 기여가치하락(downside risk)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확정기여제도의 정의에서는 기업이 부담하는 원가가 예상보다 작을 수 있는 기여가치의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제시된 사실관계에서 기업이 납부하여야 할 기여금의 잠재적 할인은 기여가치하락이 아니므로 기여금의 잠재적 할인의 존재 자체로 퇴직급여제도가 IAS 19에 따른 확정급여제도로 분류되지는 않는다고 결론 내리고, IAS 19가 퇴직급여제도의 분류를 판단하는데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 이슈를 기준서 제정 안건에 포함하지 않기로 잠정적으로 결론 내렸다.



9 IAS 19.BC29 1988년에 도입된 정의에서는 기업이 부담하는 원가가 증가할 수 있는 기여가치하락 위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확정기여제도의 정의에서는 기업이 부담하는 원가가 예상보다 작을 수 있는 기여가치의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 2. IFRS IC Agenda decisions

2019년 3월 해석위원회에서 결정한 Agenda decision은 다음과 같다.

### (1) [IAS 39, IFRS 9] 금융상품 -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요건의 적용<sup>10</sup>

해석위원회는 위험회피대상항목(예 : 예상 에너지 판매)의 결과에 따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의 명목금액이 변경되는 파생상품(Load Following Swap)의 경우, 현금흐름위험회피 관계에서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되려면 예상거래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아 한다’라는 IFRS 9과 IAS 39의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

해석위원회는 사례조사를 통해 질문에서 제시되고 있는 금융상품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해당 질문은 예상거래의 발생시기와 발생규모의 불확실성이 IFRS 9 및 IAS 39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 여부를 평가하는데 있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질문이라는 일부 견해를 확인하였고, 추가적으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지에 대한 평가는 위험회피대상항목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회피수단(Load Following Swap)의 조건이 이러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해석위원회는 IFRS 9과 IAS 39의 규정이 예상거래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지를 결정하기 위한 적절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 이슈를 기준서 제정 안전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 (2) [IFRS 9] 금융상품 -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의 실물 결제<sup>11</sup>

해석위원회는 자가사용면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미래에 고정된 가격으로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특정 계약에 IFRS 9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질의된 계약은 자가사용면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해당 계약 자체는 IFRS 9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어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될 것이나, 계약을 실물 결제할 것이므로 결제일에 비금융항목을 인도하거나 수령할 것이다.

해석위원회는 제시된 상황에서, 계약은 비금융항목을 현금과 파생상품 자산(또는 부채) 둘 다와의 교환으로 결제된다고 판단했다. 즉, IFRS 9은 계약이 궁극적으로 총액으로 결제된다는 이유 때문에 파생상품 계약의 회계처리를 변경하거나 재평가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파생상품에 대해 과거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익을 환입하고 수익(매도계약의 경우)이나 재고 자산(매입계약의 경우)에서 조정하는 회계처리는 IFRS 9에서 요구하고 있는 파생상품의 회계처리가 허용되지도 요구되지도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해석위원회는 IFRS 기준서가 이미 적절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기준서 제정안전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0 IFRS Brief 2018년 11 · 12월호 참고

11 IFRS Brief 2019년 1 · 2월호 참고

### (3) [IFRS 9] 금융상품 -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시 신용보강<sup>12</sup>

해석위원회는 IFRS 9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시 금융보증계약 또는 그 밖의 신용보강이 IFRS 기준서를 적용하여 개별적으로 인식되는 것이 요구되는 경우에도 해당 신용보강으로부터의 기대 현금흐름이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해석위원회는 IFRS 9 문단 B5.5.55에서는 계약조건의 일부이지만 별도로 인식하지 않는 담보나 그 밖의 신용보강에서 기대되는 현금흐름을 기대신용손실 측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신용보강이 IFRS에 의해 별도로 인식되는 것이 요구된다면 신용보강으로부터의 기대현금흐름을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에 포함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리고 기준서 제정 안건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 하였다.

### (4) [IFRS 9]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의 손상 회복 시 회계처리<sup>13</sup>

해석위원회는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이 후속적으로 손상이 회복되는 경우에(예 : 전액 상환 또는 더 이상 신용이 손상되어 있지 않음) 과거에 이자수익에서 차감했던 손실충당금의 시간가치 경과분(시간가치 상각액)을 이자수익으로 표시할 수 있는지, 손실충당금의 환입으로 표시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해석위원회는 IFRS 9의 정의에 따르면 총 장부금액, 상각후원가 및 손실 충당금은 모두 할인된 금액이며, 보고기간동안의 해당 항목 변동에는 현재가치의 상각효과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였고, IFRS 9 문단 5.5.8에서 손실충당금을 조정하기 위한 기대신용손실액(또는 환입액)은 손상차손(환입)으로 당기손익에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손실충당금을 조정하기 위한 금액을 손실충당금의 환입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결론 내리고 기준서 제정 안건에 포함하지 않기로 하였다.

### (5) [IFRS 11] 공동약정 - 공동영업자의 산출물 판매<sup>14</sup>

해석위원회는 공동영업자가 공동영업으로부터 수취한 산출물과 관련한 수익을 인식할 때, ①보고기간에 고객에게 이전한 산출물과 ②보고기간에 공동영업 활동을 통해 생산된 산출물의 고정 비율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 중 어떤 근거에 따라 인식해야 하는지 질의를 받았다.

해석위원회는 IFRS 11 문단 20(3), 21 등을 근거로 질의 대상 공동영업자가 해당 보고기간에 고객에게 이전한 산출물에 대해 IFRS 15를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한다고 결론 내렸다. 예를 들면, 공동영업자는 공동영업에서 수취할 권리가 있지만 아직 공동영업으로부터 수취하지 못하여 판매하지 못한 산출물에 대해서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IFRS 기준서가 적절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기준서 제정 안건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 (6) [IFRS 11] 공동약정 - 공동영업에서 공동영업자의 지분과 관련된 부채<sup>15</sup>

해석위원회는 공동영업자 중 한 공동영업자가 공동영업 활동으로 함께 운용될 유형자산에 대해 제3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리스계약을 체결한 공동영업자가 공동영업 계약에 따라 다른 공동영업자로부터 리스원가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는 경우, 공동영업자의 부채 인식에 대해 질의를 받았다.

12 IFRS Brief 2019년 1 · 2월호 참고

13 IFRS Brief 2019년 3 · 4월호 참조

14 IFRS Brief 2019년 1 · 2월호 참고

15 IFRS Brief 2018년 11 · 12월호 참조

해석위원회는 공동영업자가 IFRS 11 문단20(2)에 따라 모든 계약조건 및 관련 법률을 고려하여 공동영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채와 공동약정의 다른 당사자와 함께 발생한 부채 중 자신의 몫을 식별하고 인식해야 하며, 공동영업자가 인식하는 부채는 자신이 주된 책임(primary responsibility)를 부담하는 부채를 포함한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해석위원회는 IFRS 12 문단 20(1)에 따라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공동약정에 대하여 다른 투자자들과의 계약상 관계에 대한 성격 및 영향을 포함하여 공동약정에 대한 지분의 성격, 범위 및 재무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공시하는 것이 요구됨을 강조하였다. 해석위원회는 현재의 IFRS의 요구사항이 공동영업자가 공동영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과 관련하여 부채를 식별하고 인식할 수 있는 적절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 이슈를 기준서 제정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 (7) [IAS 23] 차입원가 - 기간에 걸쳐 이전되는 건설된 재화<sup>16</sup>

해석위원회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는 주택 개발(건물)의 건설 계약과 관련하여 회사가 인식한 수취채권, 계약자산, 재고자산이 IAS 23에서 정의하는 적격자산에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제시된 현황은 기업은 건설 시작 전에 건물 내 일부 단위는 판매 계약이 체결되었고 나머지 단위(이하 '미판매분')도 적절한 고객을 찾는 즉시 판매 계약을 체결할 의도가 있다.

수취채권은 금융자산이고 계약자산은 의도된 용도의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이 아니므로 두 자산 모두 적격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 또한 건설중인 미판매분의 재고자산(재공품)은 현재 상태로 적절한 고객을 찾는 즉시 판매 계약을 체결할 의도가 있고 고객과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단위와 관련된 재공품에 대한 통제가 이전되므로 적격자산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해석위원회는 IAS 23의 원칙과 요구사항이 질의에서 제시된 사실관계에서 기업이 차입원가 자본화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적절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기준서 제정 안건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이 논의사항에 대하여 교육자료를 개발할 예정이다.

#### (8) [IAS 38] 무형자산 - 공급자의 소프트웨어에 접근할 고객의 권리(cloud computing)<sup>17</sup>

해석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클라우드 컴퓨팅 계약(Cloud computing arrangements)에서 공급자의 소프트웨어에 접근할 권리를 사용하는 고객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고객은 특정기간 동안 공급자의 응용소프트웨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지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며, 공급자가 소프트웨어를 통제하고 클라우드 기반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현황에서 고객은 기간에 걸쳐 공급자의 응용소프트웨어에 접근할 권리를 제공받는 용역계약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용역을 제공받기 전에 공급자에게 지급한 대가가 있다면 고객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자산으로 인식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해석위원회는 공급자의 응용소프트웨어에 접근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대가에 대한 회계처리는 IFRS 기준서에서 적절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기준서 제정 안건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6 IFRS Brief 2019년 1·2월호 참조

17 IFRS Brief 2019년 1·2월호 참조

# IFRS 실무적용해설

## 〈실무적용이슈 No.68〉

### 복합금융상품에 대한 지분법 적용

K-IFRS에 따르면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해야 하며, 별도재무제표에서는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 관계기업/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원가법, 공정가치법, 지분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기준서인 K-IFRS 1028과 K-IFRS 1027에서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와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기업이 전환상환우선주, 전환우선주 또는 상환우선주 등과 같은 상품(이하 '복합금융상품')을 취득하고 피투자회사에 대한 무조건적인 이사선임권을 보유하게 되거나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을 취득하게 되는 등, 피투자회사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이나 지배력을 획득한 경우에 해당 복합금융상품의 계약조건 등에 따른 특성과 관계 없이 유의적인 영향력이나 지배력을 획득하였으므로 해당 투자에 대하여 K-IFRS 1028에 따른 지분법, 혹은 K-IFRS 1027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슈가 있다.

이번 호에서는 유의적 영향력, 공동지배력,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이 발행한 복합금융상품이 K-IFRS 1028 또는 K-IFRS 1027을 적용하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와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에 해당하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고려할 요소에 대해 알아본다.

#### (1) 소유지분과 연계된 이익에 대해 현재 접근할 수 있게 하는지(Current access)

K-IFRS 1028에서는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주식'에 대해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KPMG의 견해로는 K-IFRS 1028 문단 13에서 "소유지분과 연계된 이익에 대해 현재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거래의 결과로 실질적으로 현재의 소유권을 보유하는 경우가 있다"는 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투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소유지분과 연계된 이익에 대해 현재 접근할 수 있게 한다면 해당 투자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

한편, K-IFRS 1027에서는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이 보유하는 특성에 대해 언급이 없지만 K-IFRS 1110 문단 B90, 91<sup>18</sup>의 현재의 소유권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면, 해당 투자가 종속기업의 소유지분과 연계된 이익에 접근할 수 있게 한다면 해당 투자는 K-IFRS 1027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기업이 수취채권이나 채무상품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가 K-IFRS 1109를 적용하는 금융상품이라는 것을 쉽게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전환상환우선주, 전환우선주 또는 상환우선주 등과 같은 금융상품은 상기 언급한 것과 같이 그 투자가 소유지분에 연계된 이익에 실질적으로 현재 접근할 수 있게 하는지 판단이 필요하다.

18 K-IFRS 1110.B90 어떤 상황에서는 기업이 소유지분과 연계된 이익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거래의 결과로 현재의 소유지분을 실질적으로 보유한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기업이 이익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잠재적 의결권과 그 밖의 파생상품의 궁극적인 행사를 고려하여 지배기업지분과 비지배기업지분의 배분비율을 결정한다.

K-IFRS 1110.B91 연결대상이 되는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잠재적 의결권을 포함하고 있는 금융상품이 종속기업의 소유지분과 연계된 이익에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그 금융상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그 밖의 모든 경우 종속기업에 대한 잠재적 의결권을 포함하는 금융상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회계처리 한다.

KPMG의 견해로는 다음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복합금융상품의 모든 특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대부분의(substantially all) 이익이 피투자자의 재무성과에 의해 결정되어 보통주에 투자한 투자자와 유사한 위험에 노출되는 지를 평가해야 한다.

- ✓ 피투자자의 이익(profits)에 대한 권리
- ✓ 피투자자의 순자산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노출
- ✓ 피투자자의 손실(losses)에 노출



## (2) 복합금융상품이 발행회사 입장에서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해야 하는지

KPMG의 견해로는 복합금융상품을 취득하면서 유의적인 영향력이나 공동지배력을 획득한 경우에, 지분법 적용 여부는 첫번째 요소인 ‘피투자자의 재무성과에 의해 복합금융상품의 이익이 결정되는지’로 결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해당 복합 금융상품이 발행자 입장에서 K-IFRS 1032에 따른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닌데, K-IFRS 1032를 적용하여 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되는 결과가 ‘피투자자의 재무성과에 의해 복합금융상품의 이익이 결정되는지’와 무관하기 때문이다. (사례 1, 사례 2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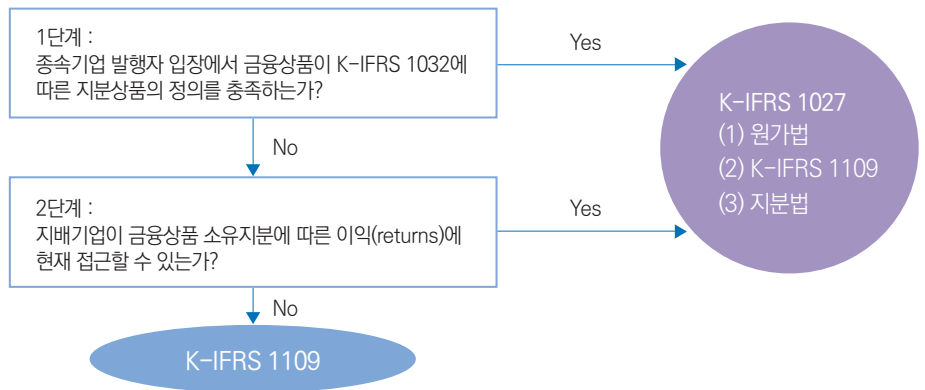
###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 해당 여부

KPMG의 견해로는 지배력을 부여하는 복합금융상품이 K-IFRS 1032에 따른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한다면 복합금융상품을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으로 보아 K-IFRS 1027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근거는 K-IFRS 1109.2.1(1)에서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 투자지분에 대한 파생상품 중 K-IFRS 1032 ‘금융상품 : 표시’에서 정의하는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파생상품에 K-IFRS 1109를 적용하는 원칙을 준용한 것이다. 즉, 종속기업 등의 투자지분에 대한 파생상품 중 지분상품의 정의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은 K-IFRS 1109를 적용하지 않는 것처럼,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종속기업이 발행한 금융상품은 K-IFRS 1109가 아니라, K-IFRS 1027 적용대상이라는 관점이다.

그러나 복합금융상품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K-IFRS 1109를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상품이 상기 (1)에서 설명한 소유지분과 연계된 이익에 현재 접근할 수 있게 한다면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으로서 K-IFRS 1027을 적용할 수 있다.

상기(1), (2)와 같이 복합금융상품의 투자로 인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획득한 경우에는 ‘소유지분과 연계된 이익에 실질적으로 현재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만 수행하면 되지만, 지배력을 획득하게 된 경우에는 복합금융상품이 발행자 입장에서 K-IFRS 1032에 따른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지도 판단해야 한다. 복합금융상품으로 인해 지배력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례 1] 실질적으로 보통주인 우선주 - K-IFRS 1028 적용

<현황>

P사는 A사가 발행하는 아래 조건의 우선주를 취득하고 A사의 이사회에 이사 1명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였다.

- ✓ 상환권 없음
- ✓ 의무 배당 조건으로 배당가능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주 보유자에 배당해야 하며, 배당가능 이익이 있는 경우 배당금액은 배당가능 이익의 일정 비율로 책정됨
- ✓ 청산 시 A사의 순자산의 지분을 만큼 배분 받을 권리가 있음

<분석>

A사가 발행하는 우선주는 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므로 현금을 지급할계약상 의무가 존재하므로 K-IFRS 1032에 따른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우선주와 연계된 이익의 대부분이 재무성과에서 발생하여 P사는 우선주의 취득으로 인하여 보통주에 투자한 투자자와 유사한 위험에 노출된다고 판단하였다.

- ✓ P사는 A사의 배당가능 이익의 일정 비율에 대한 권리가 있다
- ✓ A사의 순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에 노출되어 있고 A사 청산 발생 시 지분율 만큼의 손실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P사는 취득한 A사의 우선주에 지분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례 2] 실질적으로 보통주가 아닌 우선주 - K-IFRS 1109 적용

<현황>

P사는 B사가 발행하는 아래 조건의 우선주 5,000주(주당 액면가 10원)를 취득하고 B사의 이사회에 이사 1명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였다.

- ✓ 배당률은 액면금액의 9%로 누적되지만, B사의 재량에 따라 지급을 결정할 수 있음
- ✓ 우선주에 특정된 만기는 없음
- ✓ 청산 시 우선주주는 우선주의 액면금액에 미회수된 누적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
- ✓ B사의 당기말 순자산은 200,000이고, 당기순이익은 24,500임
- ✓ B사는 지난 2년간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음

〈분석〉

B사가 발행한 우선주는 배당금이 누적되지만 재량에 따라 지급을 결정할 수 있고, 그 지급을 청산 시까지 연기할 수 있으므로 K-IFRS 1032에 따른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한다.

그러나 P사는 청산 시 우선주의 액면금액과 미회수된 누적 배당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선주와 연계된 이익의 대부분이 B사의 재무성과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P사는 B사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은 보유하고 있지만, 해당 우선주가 보통주에 투자한 투자자와 유사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으므로 우선주에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고 K-IFRS 1109에 따라 회계처리 해야 한다.

P사가 K-IFRS 1109에 따라 우선주를 회계처리한 경우에 우선주와 보통주에 배부되는 B사의 이익은 다음과 같다.

B사의 순자산	200,000
누적적 우선주	5,000주 × 10 = (50,000)
2년간 미지급 누적적 우선주 배당금	50,000 × 2년 × 9% = (9,000)
보통주에 배분되는 순자산	141,000
P사에 배분되는 순자산	50,000 + 9,000 = 59,000
당기순이익	24,500
누적적 우선주에 대한 이익 배분	50,000 × 9% = (4,500)
보통주에 배분되는 순이익	20,000

[사례 3] 실질적으로 보통주인 우선주 - K-IFRS 1027 적용

〈현황〉

P사는 S사가 발행하는 아래 조건의 우선주를 추가 취득하였다.

- ✓ 주주총회의 의결권의 80%를 보유함
- ✓ 상환권 없음
- ✓ 의무 배당 조건으로 배당가능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주 보유자에 배당해야 하며, 배당가능 이익이 있는 경우 배당금액은 배당가능 이익의 일정 비율로 책정됨

✓ 청산 시 S사의 순자산의 지분율 만큼 배분 받을 권리가 있음

〈분석〉

[1단계]

우선주는 S사의 관점에서 의무배당 조건으로 현금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가 존재하므로 K-IFRS 1032에 따른 부채로 분류된다.

[2단계]

P사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우선주와 연계된 이익의 대부분이 재무성과에서 발생하여 결국 보통주에 투자한 투자자와 유사한 위험에 노출된다고 판단하였다.

- ✓ P사는 S사의 배당가능 이익의 일정 비율에 대한 권리가 있음
- ✓ S사의 순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에 노출되어 있고 S사 청산 발생 시 지분율 만큼의 손실에 노출되어 있음

따라서, P사는 상기 우선주에 대해 K-IFRS 1027에 따라 회계처리 한다.

[사례 4]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우선주 - K-IFRS 1109 적용

〈현황〉

P사는 S사가 발행하는 아래 조건의 만기 2년의 1,000의 우선주를 추가 취득하였다.

- ✓ 이자는 S사의 배당가능이익의 일정비율에 따라 지급함
- ✓ 만기일에 P사는 1,000의 현금 또는 고정된 수량의 S사의 우선주를 선택하여 회수할 수 있고 발행일 현재 고정된 수량의 우선주의 공정가치는 대략 1,000임

〈분석〉

[1단계]

사채는 S사의 관점에서 의무이자지급 조건으로 현금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가 존재하고 S사가 원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P사의 선택권이 있으므로 K-IFRS 1032에 따른 부채로 분류된다.

[2단계]

P사는 사채가 이차지급을 통한 S사의 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S사의 보통주의 공정가치 증가분에 대한 이익을 제공하지만, P사는 S사에 원금 1,000의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선택할 수 있으므로 S사에 대한 보통주주와 유사한 S사의 손실을 부담하고 있지는 않는다. 따라서, P사는 별도재무제표에서 S사에 대한 사채는 K-IFRS 1109에 따른 금융상품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 KPMG contacts

KPMG 삼정회계법인

Department of Professional Practice / IFRS COE

## DPP

현승임 상무

T. (02)2112-0528

E. [shyun@kr.kpmg.com](mailto:shyun@kr.kpmg.com)

박은숙 상무

T. (02)2112-0673

E. [eunsukpark@kr.kpmg.com](mailto:eunsukpark@kr.kpmg.com)

한진희 이사

T. (02)2112-6876

E. [jinheehan@kr.kpmg.com](mailto:jinheehan@kr.kpmg.com)

한상현 이사

T. (02)2112-7072

E. [shan1@kr.kpmg.com](mailto:shan1@kr.kpmg.com)

김응주 S.Manager

T. (02)2112-3227

E. [eungjookim@kr.kpmg.com](mailto:eungjookim@kr.kpmg.com)

이승훈 S.Manager

T. (02)2112-7874

E. [seunghoonlee@kr.kpmg.com](mailto:seunghoonlee@kr.kpmg.com)

양유정 S.Manager

T. (02)2112-6940

E. [youjeongyang@kr.kpmg.com](mailto:youjeongyang@kr.kpmg.com)

국민경 Manager

T. (02)2112-6601

E. [mkook1@kr.kpmg.com](mailto:mkook1@kr.kpmg.com)

이예슬 Manager

T. (02)2112-3144

E. [yaeseullee@kr.kpmg.com](mailto:yaeseullee@kr.kpmg.com)

지가현 Manager

T. (02)2112-2733

E. [gahyunji@kr.kpmg.com](mailto:gahyunji@kr.kpmg.com)

오소라 Manager

T. (02)2112-6581

E. [soraoh@kr.kpmg.com](mailto:soraoh@kr.kpmg.com)

[kpmg.com/kr](http://kpmg.com/kr)

© 2019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u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